

제 1848 호
1987. 8. 23.
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서울특별시청 행정부

시 보

차 례

◎ 공문시행

- 대한민국헌법제정법 제 105 조의 후속조치..... 3
- 서울특별시헌법자의 집구집 제 8 조의 후속조치..... 4

◎ 규 칙

- 제 2183 호 : 서울특별시보안동관리규칙 개정규칙..... 5

◎ 고 시

- 제 412 호 : 사모신분등록사략..... 9
- 제 413 호 : 사모신분등록취소..... 9

(이권제속)

총									
합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423 호 : 사회단체지부등록.....	10
제 442 호 : 보라매공원공원시설 (운동) 설치허가.....	30
제 449 호 : 자동차의정차및주차금지장소.....	12
제 452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13

◎ 공 고

제 389 호 : 전기공사업면허취소.....	13
제 390 호 : 관인교부.....	14
제 391 호 : 관인재료부및폐기.....	14
제 399 호 : 초망설비공사업면허취소예고.....	15
제 400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.....	15
제 402 호 :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.....	16
제 403 호 : 열사용기자재제조업소허가취소.....	17

◎ 구 공 고

경동구제 38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시설설치) 시행공람.....	17
동대문구제 26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적분.....	18
도봉구제 249 호 : 공인개각및폐기.....	19
서대문구제 127 호 : 관인재료부.....	24

◎ 사 령

◎ 정 칙

공 문 시 형

(관 인 생 략)

시 울 특 별 시

법무 02142-953

(731-6156)

1987 6. 23.

수신:수신처 참조

제목:대한민국 헌법임령집 추록 배부

1. 대한민국 헌법임령집 제 105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너 수
영주시 가제정리하여 임령집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할것.

가. 배부기간: '87. 6.24 ~ 6.30

나. 배부대상:대한민국 헌법임령집 보유부서

다. 배부장소 및 반성

- 본성: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문임몰을 출납원 인장 날인 수령
- 구청 및 사업소:운송배부

2. 대본보유 부서는 가제정리상태를 점검하여 익척리된 제 103회 수
록과 함께 수령, 정리하여 법전판리에 철지를 기할것. 꺾.

*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.

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:서관 1, 서과 1-5, 9, 10, 16, 18, 19, 21, 23-32, 34-47, 39, 43, 44, 46.

50, 52, 53, 59-65, 서구 1-17, 서보 1-7, 10, 13, 15, 서사 05, 06, 08-11

20, 22, 23, 34, 38, 41, 42, 52, 56

(관 인 생 약)

서 울 특 별 시

법무 02124-988

(307)

1987. 6. 23.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서울특별시헌행사치법규집 제8회 추록 배부

1. 서울특별시 헌행사치법규집 제정되거나, 개, 폐된 내용을 정리보완하여 시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발간한 서울특별시 헌행사치법규집 제8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분입물품 출납공무원 인강지참 기일 내 수령하여 기재정리 하기 바랍니

가. 배부일시 : '87. 7. 1-7. 5.

나. 배부장소 :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

다. 배부방법

- 본청 : 자료에서 직접 수령
- 구청 : 기획감사과에서 일괄수령 (관한보건소 및 동사무소분 포함)
- 사업소 : 주무부서에서 일괄수령

2. 본 추록을 수령 즉시 기재정리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기재정리후 관리에 천저를 기할것.

(*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않음)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시관01, 석과-01-57, 서구 1-17, 서자01-57, 경찰국 (경무과),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(도석자료실), 강남병원공사, 서울시설관리공단, 능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규 칙</div>		<p>◎서울특별시규칙 제 2183 호</p> <p>서울특별시보안등관리규칙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 보안등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1 조 (목적) :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보안등의 종류) :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와 같이 구분한다.</p>	
<p>서울특별시 보안등관리규칙개정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7년 6월 23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 엄 토 현 ⑩</p>			
종 류	용 량	광 속	표 용
백 열 등	60 W	810 루멘	13.5 루멘/W
백 열 등	100 W	1,550 "	15.5 "
수 은 등	100 W	3,900 "	32.5 "
내 탈 하 라 이 드 등	100 W	6,500 "	54.2 "
고 압 나 트 륜 등	50 W	3,500 "	55.3 "
저 압 나 트 륜 등	35 W	4,800 "	114.3 "
<p>제 3 조 (설 치)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안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 1 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 (단,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구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- 지상 4~6미터의 높이로 설치 2.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- 지상 4~6미터의 높이로 설치 3. 전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- 지상 2~6미터의 높이로 설치 		<p>②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선도로 - 50미터 내의 2. 곡선부 (15도이상) - 40미터 내의 3. 가파른길 (30도이상) - 40미터 내의 4. 위험한 절개지 및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 - 30미터 내의 <p>③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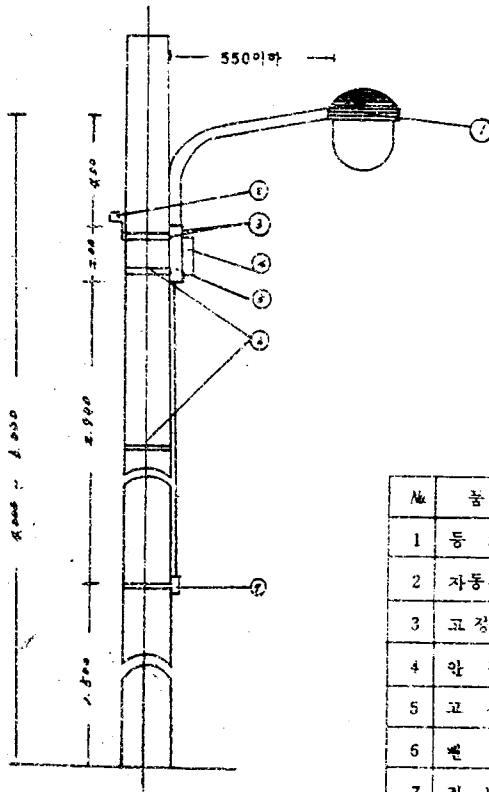
<p>제 4 조 (색 색) 보안등의 등기구의 표면의 색채는 청색으로 한다. 다만, 백열등의 등기구의 내면의 색채는 백색으로 한다.</p>	<p>하여야 하며, 고장 또는 파손된 보안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등장에게 통보하도록 분임관리자를 제정하여야 한다.</p>
<p>제 5 조 (설치 및 관리자) ① 당행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안등을 설치 및 수리, 보수한다. ② 구청장은 동장의 보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안등의 고장은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,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보안등을 관리한다.</p>	<p>제 7 조 (점멸기) ① 보안등의 점멸기는 광전식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점소등 조도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 ② 광전식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③ 광전식자동점멸기와 병설되는 수동점멸기는 유의에 설치하여야 하며, 지상 1.5 - 1.8 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.</p>
<p>제 6 조 (관리자의 의무) ①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유선 보고하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동장은 광전식자동점멸기가 부착되지 아니한 수동점멸보안등에 대하여는 부근주민 또는 묵, 반장을 점소등 분임관리자로 지정하여 적시에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④ 동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자로 하여금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되도록 점소등 관리케</p>	<p>제 8 조 (보안등 표찰 및 기류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보안등 표찰을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-2.5 미터 높이로 부착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보안등의 설치 및 수리, 보수 등 유지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안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 제 9 조 (시행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(별지 제 1-1 호)

보안등 설치규격

(한국전력공사 전주 형식)

(단위 : 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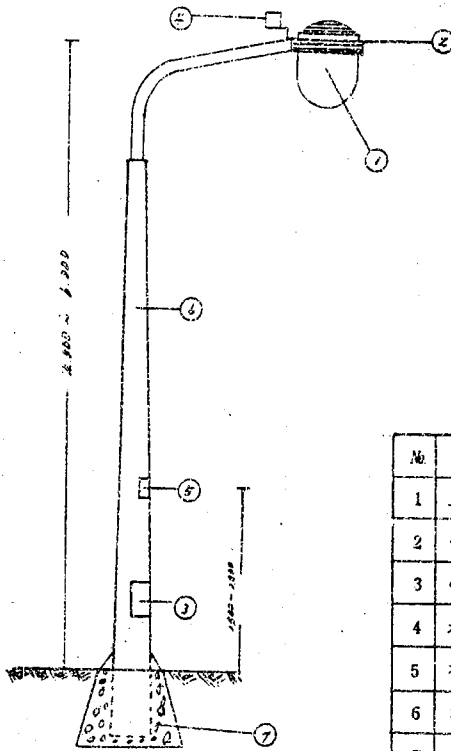


No	품명	수량	비고
1	동기 구	1	확산형
2	자동정별기	1	정전식
3	고정볼트	6	
4	안전거	1	
5	고정판	1	
6	번 드	6	
7	정별기	1	수동

(별지 제 1-2 호)

보안등설치규격 (전용주)

(단위 : mm)



No	품 명	수량	비 고
1	보 안 등	1	
2	등 기 구	1	확산형
3	안 정 기	i	
4	가동점멸기	1	광전식
5	점 멸 기	1	수 동
6	강 관 주	1	
7	기 초 Con		3 층

고 시

◎서울특별시 제 412 호

사료성분 등록사항

사료관리법 제 22조제 3항의 규정
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다음
○성분등록내역

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 6. 23
서울특별시장

- 공장명 : 아세아합미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림동 5 가 38-2
- 대표자 : 강 형 모

등록번호	사료의종류	사료의명칭및용도	주요원료명	사용방법
13-22	보조사료	피그크레이브엑스트라 (양돈용)	향미제 : Liquipig Krave Conc Drypig Krave Conc MSG, 사카린 부형제 : 실리콘 - 디옥사이드옥분	배합사료 1톤당 500g~1kg

◎서울특별시 제 413 호

사료성분 등록취소

사료관리법 제 22조제 3항의 규정
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취소사항을
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
1987. 6. 23
서울특별시장

- 공장명 : 두산목산주식회사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15
- 대표자 : 이 세 연
- 취소사유 : 경기도 부천시 상성동 15-6으로 공장이전

○성분등록 취소내역

등록번호	사료의명칭	등록번호	사료의명칭
13-1	큰소비육사료 1-2 호	13-5	육성돈사료 2 호
13-2	산란중기	13-6	착유사료 (Ⅳ)
13-3	간단폐지사료 2 호	13-7	육성비육우사료
13-4	젖먹이폐지사료 2 호	13-8	주돈육성돈사료

등록번호	사 료 의 명 칭	등록번호	사 료 의 명 칭
13-80	어린병아리사료 1호	13-101	비육돈젖기
13-88	갓난돼지사료 1호	13-102	육성돈사료 1호
13-89	주문산란초기사료	13-103	젖먹이돼지사료 1호
13-90	착유사료(Ⅰ)	13-104	육계후기사료(Ⅰ)
13-92	큰소비육사료(Ⅰ)	13-105	육계젖기사료
13-93	착유사료(Ⅱ)	13-106	종계사료
13-94	큰송아지사료	13-107	산란초기사료
13-95	중송아지사료	13-108	큰병아리사료
13-96	어린송아지사료	13-109	중병아리사료
13-97	중돈사료	13-110	어린병아리사료 2호
13-98	모유돈사료	13-113	큰소비육사료(Ⅱ)
13-100	비육돈후기	13-114	주문젖먹이사료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423 호

사회단체 지부등록

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단체지부를 등록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1987년 6월 23일
서울특별시장

1. 지부등록번호: 제 1호
2. 등록년월일: 1987년 5월 15일
3. 등록내용

○명칭: 전국환경관리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

○소재지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5동 2부력 9호

○대표자: 최 거 식

○목 적:

환경관리인의 권익보호와 기술개발 기술정보 교류로서 관리인외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서울시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.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442 호

보라매공원 공원시설(운동) 설치허가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49 (87.4.11) 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

<p>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7('87. 4.13)호로 공람 공고된 보라매 (근린)공원에 대한 종합시설지구 (수영장지구) 및 운동시설지구 (정구장지구)의 공원시설 (운동시설) 설치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및 도시계획법 제 24조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.</p> <p>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7. 6. 23 서울특별시장</p>	<p>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공원시설) 운동시설 공사</p> <p>다. 면적: 13,507 ㎡</p> <p>라. 사업시행내역: 바로 붙임</p> <p>마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용신구 서계동 53 (주)한양건설 대표 현중악</p> <p>바.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착공일: '87. 6. 19 준공일: (제 1차) '87. 12. 31 (제 2차) '88. 5. 31</p> <p>사. 사용한 토기명세서: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</p> <p>아. 토지소유자: 서울특별시</p> <p>자. 위치도 및 경면도: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</p>
--	--

공원시설 (운동시설) 사업계획

년 도	구 분	사 일 내 역	비 고
합 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면적: 13,507 ㎡ · 운동시설: 골라 3개소, 토라스케이트장 1개소 하이슬라이드 1개소, 피니스 장 4면 · 휴양시설: 씨믹스동 3동 · 편의시설: 매점 4점 	
1차 ('87 시행) 수명장지	소 제 면	<p>적: 10,160 ㎡</p> <p>운동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 풀장: 800 ㎡ (16m × 50m) · 어린이풀, 하이슬라이드풀: 720 ㎡ (18m × 40m) · 실내풀장: 300 ㎡ (12m × 25m) · 토라스케이트장: 1,163 ㎡ (W=7m, L=165m) · 하이슬라이드: 6면 	'87 하천기완공

년	도	구	분	사	업	내	역	비	고
				휴양시설	· 서비스동Ⅰ: 279㎡ (455㎡) - 2층 · 서비스동Ⅱ 및 실내촬영: 816㎡ (1,245㎡) - 2층				'87 하절기완공
				편익시설	· 매점Ⅰ: 89㎡ - 1층 · 매점Ⅱ: 80㎡ - 1층 · 기존건물 (간이매점): 145.45㎡ - 1층				'87 하절기완공
				소	면적: 3,347㎡				
2	차			운동시설	· 테니스장 (실내): H=10m (16.25×42×2면)				
				정	· 테니스장 (실외): 16.25×42×2면				
				구	· 서비스동Ⅲ: 259㎡ (804㎡)				
				원	· 기존건물: 53㎡ - 1층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449 호

자동차의정차및주차금지장소

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주정차 금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7. 6. 23.
서울특별시

도로교통법 제 28 조 6 호, 동법 제 29 조 7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상에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와 주차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제 1 조 (도로의 구분) 이 고시에서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"간선도로"라 함은 서울특별시 공고로 가로명이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.
2. "이면도로"라 함은 지정 가로

명이 없는 기타 도로를 말한다.
제 2 조 (정차 및 주차금지장소와 주차금지장소) 도로교통법 제 28 조 6 호와 제 29 조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와 주차금지장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는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나 정차 및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
2. 주차금지 장소는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

제 3 조 (규제표지)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대한 규제표지중 간선도로에는 노면표시를 주된 시설로 하고, 이면도로에는 표지판을 주된 시설로 한다. 다만, 노면표시와 표지판의 병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를 병설할 수 있다.

②판도 2차선 이상으로 신설된 도로가 지정 가로명이 없는 경우 제 1항의 간선도로에 준하여 시설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서울특별시고시 제 544 호 (85.8.12) "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주차차금지에 관한 고시"는 이를 폐지한다.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1987. 6. 23.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시고시제 421호('87.6.15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제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보 인다.

(단위: m)

구분	등급	유형	번호	목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	1	149	20	3,290	중1-135	마장교	성동구사군동 126일대 L=110m 구간
변경	"	"	"	"	"	"	"	차입시행권전정 24m-35m-45m

나. 지적승인도면: 별첨(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389 호

전기공사업면허취소

국세징수법 제 7 조 및 서울특별시

1987. 6. 23
서울특별시장

국세채납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하였던 등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다 음 -

권허번호	상 호	소 재 지	대 표 자	행정처분	사 유
2-20	승원전기㈜	중구주자동 18-1	신 수 권	면허취소	국세채납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390 호

관 인 교 부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민
원사무용 관인 (지소민원사무(전)용직
인 및 제인)을 서울특별시 관인규
칙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
하여 교부하고 동규칙 제 6조에 의
하여 공고한다.

1987. 6. 23.
서울특별시장

1. 사용개시일: '87. 6. 16
2. 사용직인: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직인 (지소민원 사무 전용)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제인 (지소민원 사무용)

인	
영	
공인명	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 소장의인 (지소민원사무용) 및 제인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391 호

관인재교부및폐기

영등포경찰서장인을 서울특별시 관
인 규칙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
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
함을 동규칙 제 6조에 의하여 공고
한다.

1987. 6. 23
서울특별시장

1. 사용 및 폐기일자: 1987.6.19
2. 사용직인: 영등포경찰서장인
3. 폐기직인: 영등포경찰서서장인

인	개 각 인	폐 가 인
영		
공인명	영 등 포 경 찰 서 장 인	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399 호

소방설비공사업 면허 취소 예고

소방법 제 42 조의 6 제 1 항제 1 호
및 동법 시행령 제 63 조 규정에 의
해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취소하고
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니 동 면허 (소방설비공사업 면허 취소대상: 별첨)

1987.6.23
서울특별시 장

소방설비공사업 면허 취소 대상

구분	영역의 소재지	대표자	면허번호 및년월일	면허종별	취 소 사 유	취 소 예정일
1 유화공정 (주)	강남구칭배본동 224-4		85-97 (85.8.20)	공사업 제 1,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6 공사실적 미신고 기술능력미달 (설비기사 4 명) 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국세채납 (2,809,893 원) 	87.7.15
2 국인산업	강남구대치동 981	김학정	86-149 (85.10.18)	공사업 제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능력미달 (설비기사 1명) 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	"
3 덕진 (주)	강남구대치동 773-6	한상연	85-102 (86.9.8)	공사업 제 1,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능력미달 (설비기사 2명) * 2 차선입신고명령 불이행 	"
4 유성건축	영등포구당산동 3가 386-1	유석창	85-224 (85.9.1)	공사업 제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능력미달 (설비기사 1명) 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86 공사실적 미신고 	"
5 한일전력 (주)	동대문구망우동 410-8	이상식 이재경	86-135 (86.9.13)	공사업 제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기술능력 미달 (설비기사 1명 부족) 	"

연번	상호	영업의 소재지	대표자	면허번호 및년월일	업종종별	취소사유	취소예정일
6	대일소방	중로구관수동 102-1	허대길	85-213 (85.9.1)	정비업 제 1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○기술능력미달 (설비기사 1명부족) 	87.7.15
7	백성건설(주)	성동구하왕실리 1동 291-10	최형철	85-357 (85.9.21)	공사업 제 1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영업소재지 불명 (전용사무실 미확보) ○기술능력 미달 (설비기사 1명부족) ○국채채납 (16,044,670원) 	"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400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

동작구소재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업소가 제규정을 위반하

였기 에너지유탄리화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사항을 취소함을 공고한다.

1987.6.23

서울특별시장

○행정처분내용

지정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	위반법규	행정처분 내용및일자
동작 제 116 호	신진시설공사	이순덕	동작구사당 1동 1031 39	부담이권 (사업장소 없음)	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7조 제 3 항	지정취소 (87.6.)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402 호

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

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제

2 종 전기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7.6.23

서울특별시장













연혁번호	업종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 사항	사 유
523호	삼호전기공사	도봉구 수유 3동172-173	이순천	면허 취소	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1년이상 공사휴업
<p>◎서울특별시공고 제 403 호</p> <p>열사용기자재제조업 소허가 취소</p> <p>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 조 1 항 에 위거 아래 열사용기자재 제조</p>				<p>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하였기에 동업시행규칙 제 17 조에 의거 공 고 한다.</p> <p>1987.5.23 서울특별시장</p>	
가 령					
허가번호	업 소 명	소 재 지	대 표 자	허 가 사 랑	조 치
영등포 11 호	선일종합설비 (주)	양평 2 가 6 - 3	김선영	1. 압력용기 (강관제) 1, 2 종 2. 온수보일러 3. 구멍탄용온수보일러 (강관제)	87.6.13 허가취소
영등포 8 호	파인트이리 제작소	양평 2 가 40-9	김기태	1. 온수보일러 1 종 2. 욕용강제보일러 2 종 3. 압력용기 1 종 4. 열풍기 5. 유류용 온풍난방기 6. 구멍탄용온수보일러	
<p>구 공 고</p> <p>◎성동구공고 제 38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공원시설설치) 시행공람</p> <p>1. 성동구농동18-11 의 3 필지에</p>				<p>대하여 도시계획 (공원시설 설치) 시행에 따른 서류의공람 및 의 견을 청취고지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 2 항에 의거 14 일간 일 반일에게 보았다.</p>	













2. 관제도서는 성동구청공원 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람.		1987.6.23 서울특별시청				
사업의종류	위 치	사업내용	시행자	공람기간	비 고	
어린이회관 달의실증축	성 동 구 동 동 18-11 의 3필지	시행면적 : 24,463.5㎡ 연건평 : 705.96㎡	재단법인 유영재단 대표 : 박근해	87.6.18 ~ 87.7.1		
	○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바랍니다. (전화 : 445-9220) ◎동대문구공고 제26호 행정실사용기재시공업 (지조업) 행정처분 에너지융합리화법 제19조 제		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 음 시공업소(제조업소)에 대해 동법 제23조1항 및 제3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 치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. 1987.6.23 동대문구청장			
다 음						
지경 번호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사 유	조치내용	시공(취소)일
207	현대난방	목동162-17	김정목	기술요원미채용	시공정지	'87.6.22-7.21
274	우성설비	면목91-65	박왕규	"	"	"
235	대성철비	목동161-1	최유열	소재불명	지정취소	'87.6.22
129	일홍설비	당우340-19	박성철	휴업재개불이행	"	"
179	성진설비	면목354-5	안백진	소재불명	"	"
72	동구종합설비	용두45-1	이종국	무단취업	"	"
210	동시설비	신설97-18	장기현	"	"	"
255	대원기업	신설114-92	박수근	"	"	"
69	제일난방(주)	휘경194-42	정재권	"	제조업허 가취소	"





<p>◎도봉구공고 제249 호</p> <p>공인개각및폐기</p> <p>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당 구 산하 미야제 1등의 12개 동사무소의 민원사무전용 및 일반사무용 공인을 개각, 사용 승인하고, 기사용 공인(직인 및 제인)을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함을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87. 6. 23 도 봉 구 청 장</p>		<p>가. 공인개각동명: (민원사무전용) 미야제 1 동, 미야제 2 동, 미나제 4 동, 미야제 5 동, 수유제 2 동, 수유제 4 동, 창제 2 동, 창문제 1 동, 상문제 3 동, 한지동, 상계제 1 동, 상계제 4 동, 증계동 (일반사무용) 상계제 1 동, 상계제 4 동</p> <p>나. 사용개시일시: 1987. 6. 19. 09:00</p> <p>다. 개각공인인명: 따로 붙임.</p>	
	<p>폐기인 (민원사무전용)</p>	<p>개각인 (민원사무전용)</p>	
인명			
공인명	<p>미 야 제 1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</p>		
인명			
공인명	<p>미 야 제 2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</p>		















	제기인 (민원사무전용)	개각인 (민원사무전용)
인 영	 	
공인명	미 아 제 4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 	
공인명	미 아 제 5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 	
공인명	수 수 제 2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
	폐기인 (민원사무전용)	개각인 (민원사무전용)
인 원		
공인명	수유계 4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	
인 영		
공인명	장 계 2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	
인 영		
공인명	방문계 1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	

	제 기 인 (민원사무전용)	계 작 인 (민원사무전용)
인 영	 	 
공인명	상 계 제 3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 	 
공인명	하 계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 	 
공인명	상 계 제 1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
	폐 기 인 (민원사무전용)	개 각 인 (민원사무전용)
인 영	 	 
공인명 상 제 제 4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	
인 영	 	 
공인명 중 제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	
인 영	 	 
공인명 상 제 제 1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 (일반사무용)		

	제 기 인 (일반사무용)	제 각 인 (일반사무용)
인 영	 	 
공인명	상 계 제 4 동 장 의 직 인 및 제 인	
<p>◎ 서대문공고 제 127 호</p> <p>관 인 재 료 부</p> <p>서대문구 관내 천연동 의 6개동의 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, 동장직인 및 제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 규칙 6조에 의 하여 공모한다.</p> <p>1987.6.23</p> <p>서 대 문 구 청 장</p> <p>다 우</p> <p>1. 관인명</p>		<p>가. 천연동장(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나. 북아현 3동장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다. 창천동장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라. 홍계 3동장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마. 홍은 3동장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바. 남가좌 1동장(일반사무용, 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사. 북가좌 1동장(민원사무전용)직인 및 제인</p> <p>2. 사용개시일 : 1987.7.1 09:00</p> <p>3. 개각공인인봉 : 별 첨</p>











영장	구분		인	
	관	인	관	인
추진동				
부아원동				
창천동				
동계동				

27-26

제 1355 호 시

보

1987.6.23

구분	일 반 사 무 용		민 원 사 무 건 용	
	직 인	계 인	직 인	계 인
홍은 3 동				
남가파 1 동				
북가파 1 동				

사 령

◎ 1987년 6월 17일자

령제 190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최 함 준	건축지도과과장 ('87.6.17 - '87.12.31)	내무부	지방건축기과
오 태 영	공원과과장 (" ")	"	지방임업기과
강 용 신	종합건설본부과장 (" ")	"	지방건설기과

령제 191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권 승 현	공무원교육원 근무물 명합.	용산구	지방행정서기보

◎ 1987년 6월 18일자

령제 193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이 재 수	치수과 다전근무물 명합 ('87.6.19 - '87.9.30)	종로구	지방토목기원
고 태 건	"	동대문구	"
황 두 식	"	은평구	"
유 인 행	"	중 구	지방토목기원보
조 용 기	"	성북구	"
이 용 규	"	도봉구	"

서울특별시 장

정 령

시보 제 1364 호 ('87.6.15 자) 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(규 칙 제 2182 호) 중의 부칙 ③항중 "울림피준비단 (울림피준비단을 포함

한다) 를 " 울림피준비단 (울림피 기 획단을 포함한다) " 로 정정함.